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3 선고 2014가합201847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유니코글로벌네트웍스 리미티드(UNICO GLOBAL NETWORKS LIMITED)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4. 9.

판결 선고2015. 4.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640,000원 및 그 중 1,923,48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4.5%의, 641,160,000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640,000원 및 그 중 1,923,48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4.5%의, 641,160,000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C(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미합중국 통화 1,800,000달러(이하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이다)를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2013. 4. 5. 유한회사 유니코네트웍스(Unico Networks, 이하 '유니코네트웍스'라 한다)에 600,000달러를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2대여'라 한다).

나. 피고들과 D(D, 이하 'D'라 한다)는 제1대여 당시 원고에게 제1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과 D는 2013. 10. 31. 원고에게 제2대여금 원금 600,000달러를 2013. 11. 30.까지 유니코네트웍스의 계좌로 변제하고, 제1대여금 원금 1,800,000달러를 1차적으로 2014. 1. 10.까지, 2차적으로 2014. 1. 31.까지 원고계좌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들과 D는 2013. 12. 4.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원금 합계 2,400,000달러를 변제할 것을 재차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약정을 합쳐서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여금 원금 1,8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제1대여일 이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제2대여 당시 원고에게 제2대여금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2대여금 원금 6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 2대여금 원금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2,564,640,000원¹⁾

및 그 중 제1대여금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923,480,000원²⁾에 대하여 제1대여일인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4. 10.까지는 연 4.5%의, 제2대여금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641,160,000원³⁾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제1, 2대여금은 홍콩 회사인 원고가 러시아 석탄광구 및 부두 이용권에 대한 투자금으로 C 및 유니코네트웍스에 송금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다만 원고가 투자금을 홍콩에서 해외로 직접 송금할 수 없어 대여금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투자처 소개인인 피고들에게 금전차용증서 및 이에 대한 담보를 형식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그에 따라 변제의사 없이 갑 제1, 2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며, 갑 제3, 4호증도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피고들이 변제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위 서류들에 기하여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강민기

판사박지현

-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달러의 매매기준율인 1달러 당 1,091원으로 계산하면, 제1대여금 원금은 1,963,800,000원($1,800,000\text{달러} \times 1,091\text{원}$), 제2대여금 원금은 654,600,000원($600,000\text{달러} \times 1,091\text{원}$)이므로 제1, 2대여금 원금 합계액은 2,618,400,000원($1,963,800,000\text{원} + 654,600,000\text{원}$)인데, 원고는 그 중 2,564,64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 2) 피고들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제1대여금 원금은 1,963,8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1,923,48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 3)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제2대여금 원금은 654,6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641,16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